

제2307호(별호)

고양시보

2026년 9월 8일 (화)

차 례

공 고

고양시 공고
제2026-2030호

고양 도시관리계획(중규모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)
결정(변경)(안) 공람 재공고

1

고양시 공고 제2026-2030호

고양 도시관리계획(중규모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공람 재공고

1. 고양 GB해제취락(중규모취락)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「고양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다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고, 관련 도서를 공람합니다.
2. 본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26년 9월 8일

고 양 시 장

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- I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- II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- III.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
 1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
 - 가) 교통시설

① 도 로

■ 도로 결정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
기정	소로	덕2	352	8	국지 도로	131	강매동 108-4	강매동 77-2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203호 (06.12.26)	매화정
변경	소로	덕3	자	4	국지 도로	129	강매동 108-4	강매동 76-4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203호 (06.12.26)	

※ ()안은 지구내 연장임

■ 도로 변경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소로 덕2-352	소로 덕3-자	- 도로 폭원, 연장, 종점 변경 - B= 8m→4m, L= 131m→129m - 종점 : 강매동 77-2 → 강매동 76-4	현황도로 및 국·공유지를 고려한 도로 변경

② 주차장 : 주민공람안(고양시 공고 제2026-1860호) 대비 변경 없음

③ 철 도 : 주민공람안(고양시 공고 제2026-1860호) 대비 변경 없음

나) 공간시설 : 주민공람안(고양시 공고 제2026-1860호) 대비 변경 없음

다) 공공문화체육시설 : 주민공람안(고양시 공고 제2026-1860호) 대비 변경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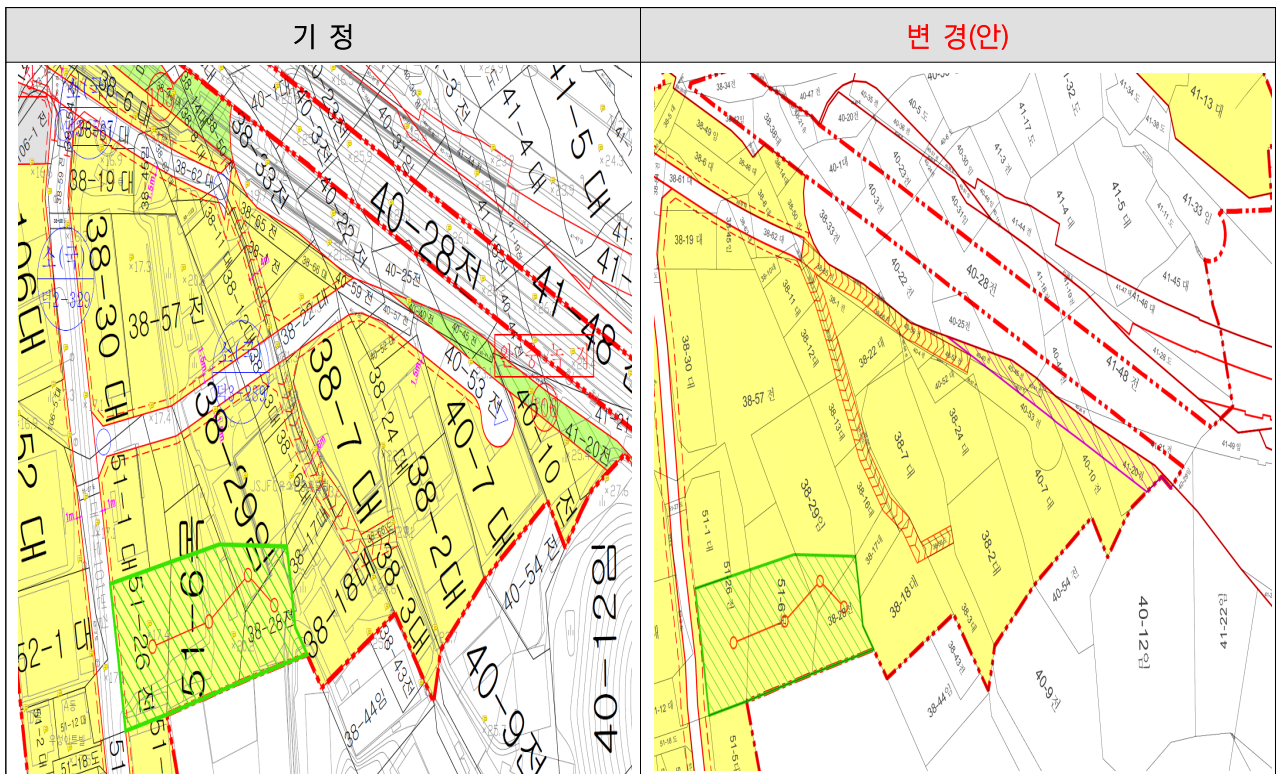
2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

주민공람안(고양시 공고 제2026-1860호) 대비 변경 없음

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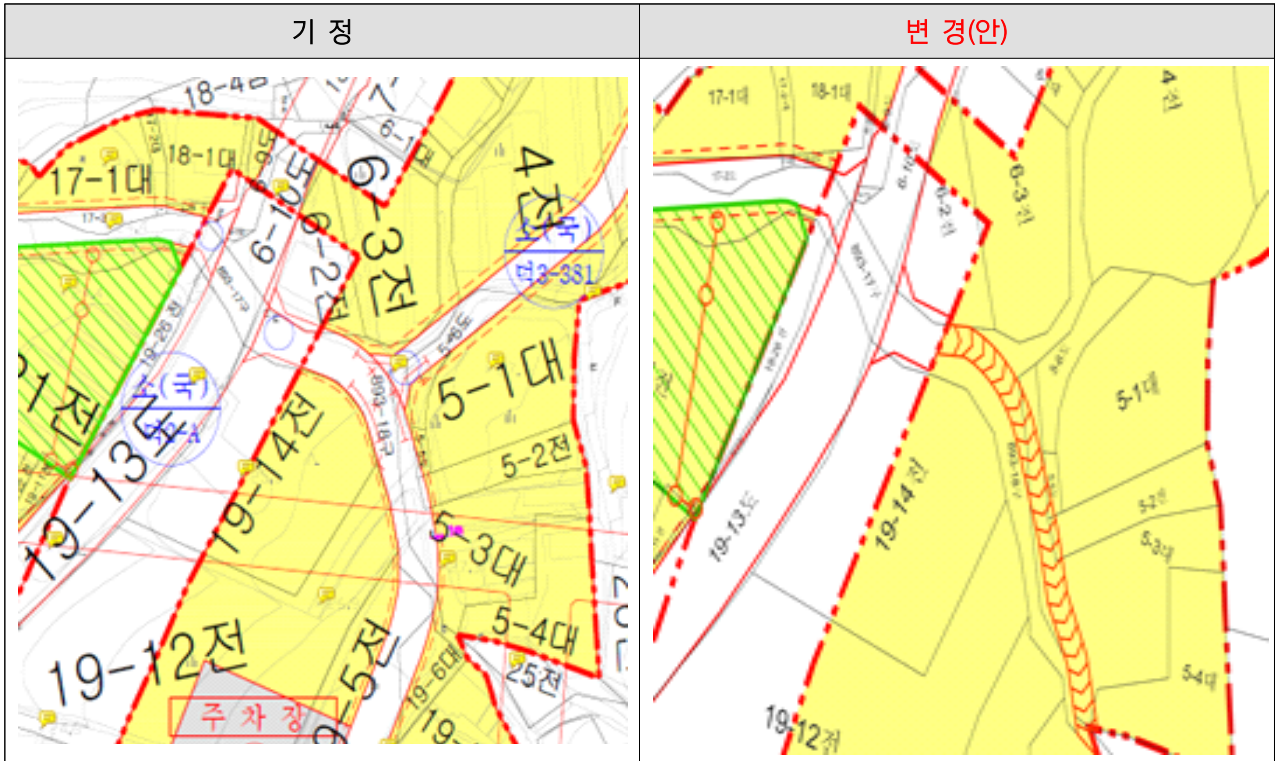
○ 가무네취락(현천동 40-57번지 일원)

- 변경내용: 보차혼용통로 변경(연장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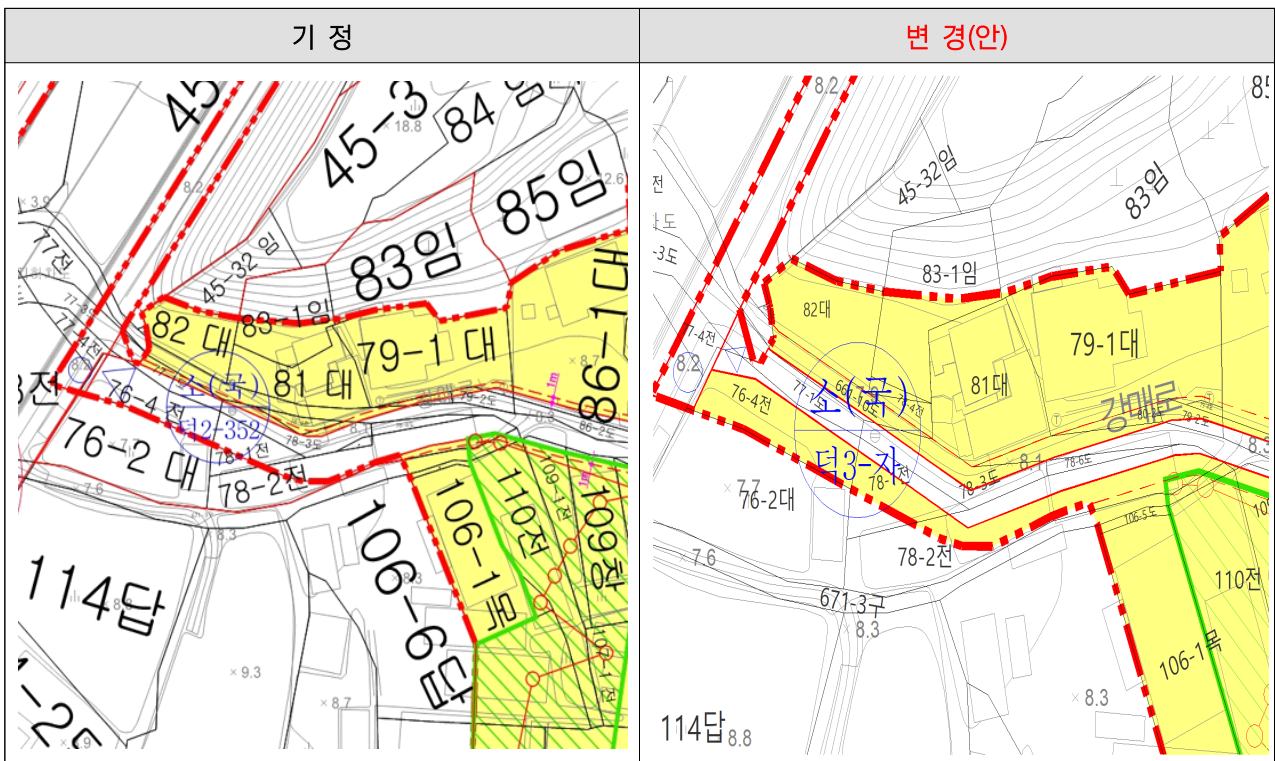
○ 옷말아랫말취락(용두동 6-2번지 일원)

- 변경내용: 보차혼용통로 변경(선형 조정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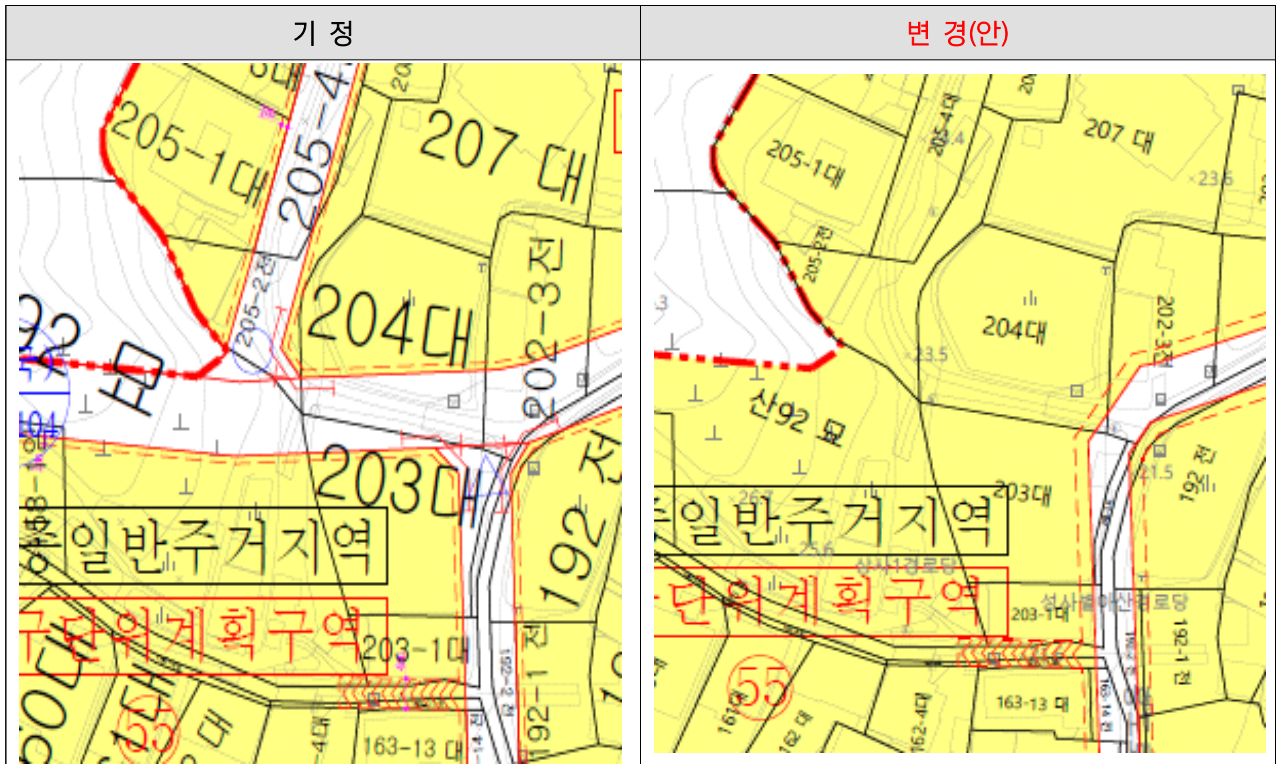
○ 매화정취락(강매동 82번지 일원)

- 변경내용: 소로 덕3-자 노선 변경(선형 조정)



○ 베라란취락(성사동 산92번지 일원)

- 변경내용: 보차혼용통로 변경(폐지)



■ 기타사항

○ 공람 및 의견 제출기간 : 2026. 9. 8. ~ 2026. 9. 22. (14일간)

○ 지구단위계획 결정(기정, 변경)도 : “계재 생략” (공람 장소에 비치)

○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처: 고양시 도시계획정책관, 덕양구 건축과 및 행정복지센터(대덕동·창릉동·행신2동·홍도동)

○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분은 성명, 주소,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(☎031-8075-308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본 계획(안)은 최종 결정 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, 공람 내용의 복사 및 사진촬영 등을 금지합니다.

의견서

공람명				
위 치				
면 적				
의견제출자	성명 및 기관·단체명		생년월일 (등록번호)	
	주 소			
	연락처			
의견내용				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제 출 자 (서명 또는 인) 고양시장 귀하				